

공사포기각서

1. 본인은 별첨 사업의 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첨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포기하며, 아래 본인의 모든 권리를 귀사에 양도함을 확인합니다.
 - 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와 체결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시공권 양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시공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 귀사가 동사업의 시공자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명의변경함에 동의하고, 귀사가 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가.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나.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주택, 아파트, 상가, 모텔하우스, 공사관리소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유치권을 포함한다)

라. 미수령공사비에 대한 모든 권리와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마.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별첨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양도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인감대조필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